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40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 송갑석 · 이용선 · 인재근

김홍걸 · 문진석 · 민형배

이용빈 · 이장섭 · 이규민

이개호 · 김주영 · 윤영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(이하 "할인 대상자")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에 대하여 할인제도(이하 "복지할인")를 운영하고 있음.

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 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, 복지할인 제도 자체 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,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 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 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감 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 신설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 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 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조의2(관계 기관에 대한 협
	조 요청) ① 전기판매사업자는
	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
	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
	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, 기초
	생활수급자등록사항, 장애인등
	록사항,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
	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
	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
	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
	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
	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
	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
	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
	<u>야 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
	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
	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
	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
	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
	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
	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

제10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공하거나	누설하여서는	아니
<u>된다.</u>		

-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 자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 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 제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(벌칙)	①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